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10.1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2020.10.7. 나상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10.8.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의안번호 제2524호).

2. 제안이유

국내 당뇨병 인구가 최다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발병 연령대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형 당뇨병의 경우 청년 및 유소년 층에서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이러한 청년층의 당뇨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로잡아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혈당과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회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바. 사무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입니다.

○ 주요내용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회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사무 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령검토

- 본 조례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 및 「청년기본법」제3조(정의)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 중 양천구 거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 조례안 제정과 관련,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종합의견**

- 양천구 관내 연도별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수는 표와 같습니다.

〈표 1 : 9-39세 당뇨병 환자, 건강보험 대상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뇨병 환자수	1,663	1,663	1,878	1,858	1,892

- 2018년 9-39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수는 1천8백9십2명으로, 2014년에 비해서 약 14%에 해당하는 229명이 증가했습니다.

-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은 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당뇨병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회적 편견의 대상 또는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상위법에 따르고 있고 양천구 거주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